

2018년도 제1회 법무부 출입국관리직 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8년도 제1회 법무부 출입국관리직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2일
법무부장관

1. 선발예정인원

○ 선발기관·선발분야별 경쟁에 의한 합격자 결정 (중복지원 불가)

선발분야	선발예정직급	임용예정직위	선 발 기 관	선발인원
무도분야 (자격중소지자)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출입국관리 서기보 (9급)	출입국사범 조사·단속·보호 및 출입국심사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18명
		출입국사범 조사·단속·보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2명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1명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1명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2명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4명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1명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1명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1명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1명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1명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	1명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1명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1명
			화성외국인보호소	2명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 군산출장소	2명

선발분야	선발예정직급	임용예정직위	선 발 기 관	선발인원
태국어분야 (외국어우수자)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8호	출입국관리 서기보 (9급)	출입국심사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4명
			김해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1명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1명

선발분야	선발예정직급	임용예정직위	선 발 기 관	선발인원
러시아어분야 (외국어우수자)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8호	출입국관리 서기보 (9급)	출입국심사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4명
			김해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1명
			김포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1명

선발분야	선발예정직급	임용예정직위	선 발 기 관	선발인원
아랍어분야 (외국어우수자)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8호	출입국관리 서기보 (9급)	출입국심사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1명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1명
		체류심사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1명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1명

2. 시험과목

선발분야	무도자격 소지자	외국어우수자		
		태국어	러시아어	아랍어
필기시험	한국사	한국사	한국사	한국사
	영어	태국어	러시아어	아랍어

3. 담당예정 업무

- 출입국사범 단속 및 조사
- 외국인 보호시설 보호 및 계호
- 출입국심사 및 체류관리 등 출입국관리업무 전반

4.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임용규칙」,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5. 시험방법

무도자격 소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1, 2차 시험 병합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택형 필기시험(각 과목별 4지선다 20문항) - 시험과목 : 한국사, 영어 ○ 제 3차 시험 :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외국어우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1, 2차 시험 병합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택형 필기시험(각 과목별 4지선다 20문항) - 시험과목 : 한국사, 선발분야별 외국어 ○ 제 3차 시험 :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 전분야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0% 범위 내에서 합격자 결정(단,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함)

- 면접시험 : 개별 또는 단체 대면면접

평 정 요 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 및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평정에서는 외국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출입국행정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 어학능력 면접 강화

- 위 평정요소를 면접위원이 상, 중, 하로 평가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우수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하고 "상"의 개수가 같을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 "미흡"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필기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 처리

6. 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 선발기관·선발분야별 경쟁에 의한 합격자 결정
 - ※ 응시원서는 다른 분야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중복지원 시 불합격 처리

【전 분야 공통】

채용공고	응시원서 접수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 험 일	합 격 자 발 표 일
3. 12.(월)	3. 19.(월)	필기시험	4. 6.(금)	4. 14.(토)	4. 24.(화)
3. 22.(목)	3. 22.(목)				

- ※ 무도자격 소지자는 서류전형을 실시하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시 발표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장소의 공고 등 모든 시험일정은 법무부 및 인사혁신처(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

7. 응시자격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18. 5. 2. 예정) 기준]

가. 응시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같은 법 제74조 정년(60세) 이상인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 불가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예정일)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 (2000.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거주지 : 제한없음

라.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입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마. 병역사항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2018. 5. 2. 예정)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무도자격 소지자 응시자격요건

- 태권도·유도·검도 공인 4단 이상 보유자(무도별 합산하지 않고 단일 종목으로 4단 이상자에 한함)
 - 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에서 발급한 단증에 한함
 - ※ 무도자격증 취득기준일은 최종(면접) 시험예정일(2018. 5. 2.) 기준으로 판단함

□ 외국어우수자 응시자격요건

- 별도 자격요건 없음

8. 원서접수 방법

□ 원서접수 기간 : 2018. 3. 19.(월) ~ 3. 22.(목) 09:00 ~ 18:00

□ 원서교부 및 접수방법

- 법무부 홈페이지, 인사혁신처(나라일터) 및 대한민국공무원되기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
- 방문 및 우편(등기)접수 : 근무희망 기관에서만 접수 **【별첨 2 참조】**
 - 일과시간 : 09:00 ~ 18:00 접수가능(중식시간 12:00~13:00 제외)
 - 우편(등기) 접수자는 원서접수 기관에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
 - ※ 접수기관의 주소 및 연락처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개 > 소속기관에서 약도 등 참조

참 고 사 항

- 선발기관·선발분야별 경쟁에 의한 합격자 결정
 - ※ 응시원서는 다른 분야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중복지원 시 불합격 처리
- 응시자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응시수수료는 5천원 상당 정부수입인지를 우체국 또는 은행에서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부착(전자수입인지 첨부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제출
- 우편접수 시에는 2018. 3. 22.(목) 18:00까지 응시원서 접수처에 도착하여야 하며, 응시표를 받을 수 있도록 **회신용 봉투에 우표(반드시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등을 기재하여야 함(봉투에 “**응시원서재중**” 표기)
- 응시철회 의사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한하여 당초 응시원서 접수 기관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응시표” 및 “【별첨 4】 응시의사 철회 / 응시수수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철회할 수 있음. 다만, 응시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응시원서 및 응시서류는 반환 불가

9. 제출서류

- 응시원서 1통(별지서식 1)
-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cm×4cm)을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 주민등록초본(남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주민등록초본상 병역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군복무확인서 1통 추가 제출
- 무도단증 사본 1부(무도분야 응시자)
 - 무도단증은 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에서 발급한 것에 한하여 인정(무도별 합산하지 않고 단일 종목으로 4단 이상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별첨 5】

10. 가산특전

□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및 적용범위	비고
택1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선발예정인원의 30% 이내)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 개만 적용
	의사상자 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선발예정인원의 10% 이내)	

※ 직렬 공통으로 적용되었던 통산·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은 2017년부터 폐지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 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및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사자 본인 및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 5% / 3%)을 가산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 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음(단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여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확인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 국가보훈처(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
 - 의사상자 등 여부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지원과(☎ 044-202-3258)에 확인

□ 가산점의 적용

- 가산특전은 필기시험에 한하여 인정하며, 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을 득점한 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고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 표기란에 표기해야 함

11. 기타 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
-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 및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법무부홈페이지, 인사혁신처(나라일터), 대한민국 공무원되기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불가
-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및 평락(전과목 총점의 6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계법령을 적용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음
-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원서접수 및 시험실시일 등을 재공고하여 시행 할 수 있음
- 우편(등기) 접수자는 원서접수 기관에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
- 최종 합격자가 포기하는 등의 사정(임용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2】 응시원서 접수기관으로 문의

【별첨 1】

직무기술서 (무도분야 - 출입국사범 조사·단속·보호 및 출입국심사)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지역)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각 과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국사범 단속, 조사,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국관리사범 단속에 관한 사항 -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조사에 관한 사항 - 외국인보호 및 보호외국인의 강제퇴거 등에 관한 사항 ○ 출입국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외국인에 대한 입·출국심사 - 그 밖에 내·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 	
필요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공동체 마인드(협업의식) ○ (직무분야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법, 국적법, 난민법 등 법령에 관한 지식 - 국경관리 등 국익과 외국인 인권의 조화를 꾀할 수 있는 외국어 능력 및 현장업무 수행 능력 	
응시 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도분야 : 태권도·유도·검도 공인 4단 이상 보유자 (무도별 합산하지 않고 단일 종목으로 4단 이상자에 한함) ※ 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에서 발급한 단증에 한함 	
	<table border="1"> <tr> <th style="text-align: center;">자격증</th> <td>○ 무도분야 : 태권도·유도·검도 공인 4단 이상</td> </tr> </table>	자격증
자격증	○ 무도분야 : 태권도·유도·검도 공인 4단 이상	

직무기술서

[무도분야 - 출입국사범 조사·단속·보호]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지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기관 (응시원서 접수 소속기관)	선발 소속기관 각 과(소속기관 소재지)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국사범 단속, 조사, 보호 - 출입국관리사범 단속에 관한 사항 -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조사에 관한 사항 - 외국인보호 및 보호외국인의 강제퇴거 등에 관한 사항
-------------	---

필요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공동체 마인드(협업의식) ○ (직무분야 역량) -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법, 국적법, 난민법 등 법령에 관한 지식 - 국경관리 등 국익과 외국인 인권의 조화를 꾀할 수 있는 외국어 능력 및 현장업무 수행 능력
-------------	--

응시 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도분야 : 태권도·유도·검도 공인 4단 이상 보유자 (무도별 합산하지 않고 단일 종목으로 4단 이상자에 한함) ※ 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에서 발급한 단증에 한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자격증</td> <td>○ 무도분야 : 태권도·유도·검도 공인 4단 이상</td> </tr> </table>	자격증
자격증	○ 무도분야 : 태권도·유도·검도 공인 4단 이상	

직무기술서

[외국어우수자(태국어·러시아어·아랍어) - 출입국심사]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지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기관 (응시원서 접수 소속기관)	선발 소속기관 각 과(소속기관 소재지)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국심사 - 내·외국인 출입국심사 등에 관한 사항 - 선박 등의 검색 및 상륙허가에 관한 사항 - 외국인에 대한 퇴거지원 및 계호 - 그 밖에 내·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
-------------	---

필요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공동체 마인드(협업의식) ○ (직무분야 역량) -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법, 국적법, 난민법 등 법령에 관한 지식 - 국경관리 등 국익과 외국인 인권의 조화를 꾀할 수 있는 외국어 능력 및 현장업무 수행 능력
-------------	--

응시 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학분야 : 응시자격요건 없음
-------------------------	--

직무기술서
[외국어우수자(아랍어) - 체류심사]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지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기관 (응시원서 접수 소속기관)	선발 소속기관 각 과(소속기관 소재지)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류심사 - 외국인 체류자격 부여 등 각종 체류허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국적·난민 업무에 관한 사항
-------------	--

필요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공동체 마인드(협업의식) ○ (직무분야 역량) -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법, 국적법, 난민법 등 법령에 관한 지식 - 국경관리 등 국익과 외국인 인권의 조화를 꾀할 수 있는 외국어 능력 및 현장업무 수행 능력
-------------	--

응시 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학분야 : 응시자격요건 없음
-------------------------	--

【별첨 2. 응시원서 접수기관】

기관	구분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인천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021호	032-740-7013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51	02-2650-6214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부산시 중구 충장대로 20	051-461-3096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인천시 중구 서해대로 393	032-890-6407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39	031-695-3815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51	02-2650-4617	
김해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부산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051-979-1325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제주도 제주시 용담로 3	064-741-5413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대전시 중구 목중로 26번길 7	042-220-2111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전남 여수시 무선로 265	061-689-5519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475번길 23	031-828-9304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울산시 남두 돌질로 86 삼호빌딩 2층	052-279-8024	
김포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38	02-2666-1041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광주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22	062-605-5206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30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055-981-6040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사암길 12	033-269-3221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 12번길 52	043-230-9032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857	063-249-8621	군산출장소 지원자 원서접수처
화성외국인보호소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39	031-8055-7014	

※ 우편(등기) 접수시 봉투에 “응시원서 재중” 표기

【별첨 3. 모집단위별 담당예정 업무 및 응시자격 요건】

선발분야	선 발 기 관	선 발 인 원
무도분야 (자격중소지자)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2호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18명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2명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1명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1명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2명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4명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1명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1명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1명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1명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1명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	1명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1명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1명
화성외국인보호소	2명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 군산출장소	2명	

선 발 분 야	채 용 직 무	응시자격요건
무도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국사법 단속 및 조사 - 외국인 보호시설에서의 보호업무 - 불법체류외국인 강제퇴거 및 계호 - 그 밖에 내·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권도 · 유도 · 검도 공인 4단 이상 보유자 (무도별 합산하지 않고 단일 종목으로 4단 이상자에 한함) ※ 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에서 발급한 단증에 한함

선발분야	선 발 기 관	선 발 인 원
태국어분야 (외국어우수자)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8호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4명
	김해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1명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1명

선발분야	선 발 기 관	선 발 인 원
러시아어분야 (외국어우수자)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8호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4명
	김해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1명
	김포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1명

선발분야	선 발 기 관	선 발 인 원
아랍어분야 (외국어우수자)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8호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1명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1명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1명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1명

선 발 분 야	채 용 직 무	응시자격요건
태국어분야 러시아어분야 아랍어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외국인 승객 및 승무원에 대한 출입국심사 - 내·외국인의 항공기와 선박검색 - 그 밖에 내·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 	없음

【별지 1】

응시원서 (원본)

본인은 2018년도 제1회 법무부 출입국관리직 9급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8년 월 일
법무부장관 귀하

※ 응시번호						성명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cm×4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㉞)
응시분야							(한자)	
생년월일			-					
주 소	(우 -)							
전자우편						복수국적	(예 <input type="checkbox"/> ,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전 화						휴대전화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곳 5,000원

※ 응시번호					응 시 표	
2018년도 제1회 출입국관리직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분야	분야	성명				
생년월일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cm×4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㉞)					
2018년 월 일 법 무 부						

주 의 사 항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응시원서에 부착된 동일원판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 당일 현장에서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지정된 시험장으로 오셔서 안내 받으셔야 합니다.

보완사항 _____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응시분야 : 무도자격 분야, 태국어 분야, 러시아어 분야, 아랍어 분야로 표시
- 성명, 생년월일, 주소(우편물 수령을 위한 현재 거주하는 곳),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복수국적여부 : 예, 아니오 중 선택(체크) 표시
-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천연색 사진(3cm×4cm, 반명함)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 정부수입인지(5,000원)를 구입하여 영수증 첨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발신용 소봉투 기재 예시)

※ 보내는 사람 (접수처)

응시원서 접수기관을 선택하여 기재

0 0 0 0 0

※ 받는사람(응시자)

(성명) 홍길동(응시자 본인)

(주소) 서울시 OO구 OO로 20-1

0 0 0 0 0

등기 우편료
상당 우표를
붙여야 함

응시원서 우편접수요령

- 응시원서등 응시원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 발신용 우편봉투에 응시자 성명·주소를 기입
- 응시원서를 응시원서보다 큰 봉투에 넣고, 접수처주소 및 응시자 성명·주소를 기재하여 우송
- 대봉투 우측상단에 응시원서임을 알 수 있도록 '응시원서' 표시